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환명령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과징금 전환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9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상환명령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과징금 전환	3
※ 참고자료	7
1.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7
2. 평균 배출량 제도 개요	9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2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Ⅲ. 검토의견

1. 상환명령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과징금 전환

개정안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가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u> 7의3. ~ 13. (생략)	<u>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7의3.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0조의2¹⁾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²⁾에서 나오는 배출가스(탄화수소, 질소산화물(NOx))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 평균 배출허용기준³⁾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법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참고자료 1)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의2])

해당 연도의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법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 초과분에 대한 상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평균 배출허용기준 달성 여부를 계산하는 산정 방식에 해당 연도의 전체 출고량이 반영된다는 점⁵⁾을 고려할 때, ‘전체 출고량’의 경우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⁶⁾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이 있음⁷⁾.

4) **법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시행규칙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5) **(참고자료 2)** 평균 배출량 제도 개요(환경부)

6) 2015년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상환명령은 총 18건이고, 이 중 상환명령 미이행은 5건(고발 완료 4건, 고발 예정 1건)임.(환경부)

7) 동 제도는 한미 FTA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 미국에서도 위반 시 형벌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환경부).

[평균 배출량 및 차이분·초과분 산정방법]

	정의	계산식
평균배출량	1대당 NMOG + NO _x 배출량 (‘NMOG + NO _x ’의 인증기준별 가중평균)	$\Sigma(\text{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times \text{배출기준별 ‘NMOG + NO}_x\text{’ 기준값}) + \Sigma(\text{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times \text{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NMOG + NO}_x\text{’ 배출값**}) \div \text{전체출고량}$
차이분· 초과분	전체 출고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배출량과의 차이	$[(\text{해당연도 ‘NMOG + NO}_x\text{’ 평균 배출허용기준}) - (\text{자동차 제작자가 달성한 ‘NMOG + NO}_x\text{’ 평균 배출량})] \times \text{전체출고량}$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이에 개정안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가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형벌을 대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에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조치 명령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령⁸⁾에서는 과징금 부과 요건을 ‘자동차를 제작하고

8) **법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한 경우’로 규정하고, 부과기준을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배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총 배출액’이 아닌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의 단년도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를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재처분을 보다 경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칙에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배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배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배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배출액으로 한다.

※ 참고자료

1.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개정 2015.12.31.>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1.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3. 평균 배출허용기준
 -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0.025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2 g/km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3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7 g/km 이하	0.027 g/km 이하

- 2) 연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아래와 같은 자동차제작자의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연간 출고대수	250대 이하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km	0.039g/km	0.030g/km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연간 출고대수	4,500대 이하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km	0.037g/km

나. 2016년 1월 1일 이후

-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도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자동차 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63g /km 이하	0.058g /km 이하	0.053g /km 이하	0.048g /km 이하	0.043g /km 이하	0.039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9g /km 이하	0.024 g/km 이하	0.019g/k m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74g /km 이하	0.068g /km 이하	0.062g /km 이하	0.056g /km 이하	0.050g /km 이하	0.043g /km 이하	0.037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 g/km 이하	0.019g/k m이하

-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 이후
0.100g/km 이하	0.078g/km 이하	0.044g/km 이하

- 3) 자동차제작자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4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다음 표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는 차종별로 2.61g/km 이하이어야 한다.

연도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적용모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 소산화물	0.069 g/km 이하	0.064 g/km 이하	0.061 g/km 이하	0.056 g/km 이하	0.052 g/km 이하	0.048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9 g/km 이하	0.036g /km 이하	0.031g /km 이하	CVS-75, US06, SC03 합산모드

2. 평균 배출량 제도 개요(자료: 환경부)

□ 개 요

- 연도별 판매한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 이내에 상환
-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여 평균 배출량을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아지도록 하고,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과 평균 배출량과의 차이분으로 초과분을 상환

※ 한·미 FTA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CARB) 제도 도입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제71조의3

□ 대상 차종

-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중·소형 승용·화물자동차

□ 평균 배출허용기준

- ‘탄화수소(배기관가스)(NMOG) 및 질소산화물(NOx)*’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15년까지는 탄화수소(배기관가스)(NMOG**), '16년부터는 NMOG + NOx

** Non-Methan Organic Gas(메탄을 제외한 유기화합물 가스)

(단위: g/km)

적용대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군	경차										
	소형승용차(SUV 제외)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63	0.058	0.053	0.048	0.043	0.039	0.034	0.029	0.024	0.019
2군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소형 SUV 중형 승용·화물차	0.074	0.068	0.062	0.056	0.050	0.043	0.037	0.031	0.025	0.019

※ 연간 전체 출고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 적용

※ 합산모드로 인증받은 경우 별도의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 평균 배출량 및 차이분·초과분 산정방법

○ 평균 배출량

- 1대당 **NMOG + NOx** 배출량(즉, 'NMOG + NOx'의 인증기준별 가중평균)

※ 인증기준별 'NMOG + NOx' 배출허용기준값*(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출값**)에 인증기준별 출고량을 곱한 값의 합을 전체 출고량으로 나눈 값

< 평균 배출량 계산식 >

$$\frac{\sum(\text{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times \text{배출기준별 'NMOG + NOx' 기준값}) + \sum(\text{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times \text{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NMOG + NOx' 배출값**})}{\text{전체 출고량}}$$

* 기준1(0.1g/km)부터 기준7(0g/km)까지 7가지 기준값이 있으며 인증시 제작자가 선택

** 배출값은 기준값보다 낮음(하이브리드자동차에 인센티브 부여)

○ 차이분·초과분

- 전체 출고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배출량과의 차이

※ 평균 배출허용기준값에서 평균 배출량을 뺀 값에 전체 출고량을 곱한 값으로, +인 경우는 차이분이라 하고, -인 경우는 초과분이라 함

< 차이분·초과분 계산식 >

$$[(\text{해당연도 'NMOG + NOx' 평균 배출허용기준}) - (\text{자동차 제작자가 달성한 'NMOG + NOx' 평균 배출량})] \times \text{전체 출고량}$$

※ 평균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1군/2군) 별 각각 위 수식에 따라 계산 후 합산

□ 이월 및 상환

- 평균 배출허용기준보다 평균 배출량이 낮은 경우(평균 배출허용기준 > 평균 배출량) 그 차이분(+값)은 5년간 이월사용 가능
- 평균 배출허용기준보다 평균 배출량이 높은 경우(평균 배출허용기준 < 평균 배출량) 그 초과분(-값)은 3년 이내 상환의무

□ 상환명령

- 이전 5년간의 차이분(+값)을 당해연도 초과분(-값) 상환에 사용하였음에도 잔여 초과분(-값)이 있는 경우 상환명령
- 이후 3년간의 차이분(+값)으로 해당연도의 모든 잔여 초과분(-값)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명령 미이행